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의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조치할 사항】 참조	2017년 (3.)	통보(1) 개선요구(10)	-	-	-	-

제 목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특별채용 규정 운영

【지적내용】

○ 서울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은 총 14개이다.

[표1]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16. 7. 1.현재)

(단위 : 개)

구 분	기관수	기 관 명
출자기관	1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연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형성교육진흥원,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및 2016년 설립되어 감사일현재 미 지정된 50플러스재단 및 서울디지털재단 제외

○ 한편, 구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 특별채용 시 채용공고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통보(2011. 7. 4.) 등에 따라 2013. 2.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¹⁾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통보하였다.

○ 위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제정)」 제12조(직원의 채용)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은 채용 유형(신규 또는 경력직)과 관계없이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시 산하 14개 출자·출연기관 인사규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6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10개 출연기관 내부 인사규정에는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표 2]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채용관련 인사규정 부적정 현황

연번	출자·출연기관	채용관련 인사규정
1	서울의료원	제15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한다.
2	서울연구원	제8조(임용의 방법)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3	서울 산업진흥원	제17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대면심의를 통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별표 제1호]에 의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4	신용보증재단	제12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이 제정·시행되면서 위 지침이 폐지(2014. 9.25.) 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 제정됨

5	서울복지재단	제8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6	서울시립교향악단	제13조(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7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제9조(채용의 방법) ①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경력경쟁시험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8	서울 디자인재단	제5조(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견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9	서울장학재단	제11조(채용방법) ①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0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제5조(임용방법) ① 진흥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자료 : 출자·출연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 그 결과 서울연구원 및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채용공고 없이 3명을 특별 채용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 '14. 3.2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퇴직공직자를 특별채용한 사례 없음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특별채용 현황 (2013. 2.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이후)

연번	기관명	특별채용자			특별채용 사유	기타	
		입사일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채용 직위(직급)
1	서울연구원	'13.03.11	유경상	- (주)PIVOTEC 연구소 과장 - 삼성전자 마케팅기획그룹 차장	부연구위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신속한 충원	
2	서울시복지재단	'15.06.22	전** (89.02.17)	- 덕성여자대학 사무조교	계약직	대표이사 비서	정규직 전환 예정
3		'16.08.03	이** (63.08.03)	- 고려운수, 택시친절센터	계약직	대표이사 기사	기능직 전환 예정

※ 1년 이내 단기 계약직,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정규직 채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 특별채용 등 제외

【조치할 사항】

○ 기획조정실장(공기업담당관)은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임직원 채용과정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서울의료원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장,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 다른 법률이 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등 서울시 정책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 유형(신규 또는 경력)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을 거치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